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며,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와 품목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업무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업무정지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과 품목업무정지처분을 병과(併科)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날(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품목업무정지의 경우 품목이 다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사항의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 바.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 화장품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 아. 영 제2조제2호라목의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금지"는 "수입대행금지"로, "판매업무정지"는 "수입대행업무정지"로 본다.
-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1)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다)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
 - 2)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가)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의 원인이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된 경우
 나) 비병원성 일반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내용	관련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의 다음의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 항제1호				
1) 화장품제조업자·화장 품 책임판매업자(법인 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또는 그 상호(법인 인 경우 법인의 명칭) 의 변경		시정명령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5일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 지 1개월
2)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제조업무정 지 1개월	제조업무 정지 3개 월	제조업무 정지 6개 월	등록취소
3)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판매업무정 지 1개월	판매업무 정지 3개 월	판매업무 정지 6개 월	등록취소
4)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시정명령	판매업무 정지 7일	판매업무 정지 15일	판매업무 정 지 1개월
5) 제조 유형 변경		제조업무정 지 1개월	제조업무 정지 2개 월	제조업무 정지 3개 월	제조업무 정 지 6개월
6) 영 제2조제2호가목부 터 다목까지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책임판매 유형 변경		경고	판매업무 정지 15일	판매업무 정지 1개 월	판매업무 정 지 3개월
7) 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 록한 자의 책임판매		수입대행업 무정지 1개 월	수입대행 업무정지 2개월	수입대행 업무정지 3개월	수입대행업 무정지 6개 월

유형 변경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1항 또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2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 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의 전부가 없는 경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작업소, 보관소 또는 시험실 중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	개수명령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업무정지 2개월	제조업무정지 4개월	
3)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일부가 없는 경우	개수명령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4)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化粧품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업무정지 2개월	제조업무정지 4개월	
나) 제6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한 경우	개수명령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라.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맞춤형化粧	법 제24조 제1항				

품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바. 법 제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아.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1) 심사를 받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제2호의2				
		시정명령	판매업무정지 5일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시정명령	판매업무정지 5일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2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4개월
		시정명령	판매업무정지 5일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3	시정명령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법 제24조 제1항 제5호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업무정지 12개월	등록취소	

2) 보고하지 않은 기능 성화장품을 판매한 경 우		판매업무정 지 3개월	판 매 업 무 정지 6개 월	판 매 업 무 정지 9개 월	판 매 업 무 정 지 12개월
자.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 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 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5호 의2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 매 업 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 매 업 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 매 업 무 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판 매업무 정지 12개월
차.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6호				
1) 제11조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 월	제조 또는 해 당품목 제조 업무정지 3 개월
2) 제11조제1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 리기록서 및 품질관 리기록서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를 거 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 지 1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 지 9개월
나) 작성된 제조관리 기준서의 내용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 지 15일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 지 6개월
3) 제11조제1항제3호부 터 제5호까지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 지 15일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 지 6개월
4) 제11조제1항제6호부 터 제8호까지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

경우	지 15일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지 6개월
5) 제12조제1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별표 1에 따라 책 임판매관리자를 두 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2개월
나) 별표 1에 따른 품질 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작성한 경우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등록취소
다) 별표 1에 따라 작성 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의 내용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2개월
라) 그 밖에 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7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
6) 제12조제2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별표 2에 따라 책임 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2개월
나) 별표 2에 따른 안전 관리 정보를 검토하 지 않거나 안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2개월

우			3개월	6개월	
다)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6개월	
7) 그 밖에 제12조제3호 부터 제11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6개월	
8) 법 제5조제3항을 위반 하여 소비자에게 유통 · 판매되는 화장품 임의로 혼합·소분한 경우	판매업무정 지 15일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 지 6개월	
9) 제12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5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6개월	
10) 제12조의2제3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6개월	
11) 제12조의2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7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	
12) 제12조의2제5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6개월	
카. 법 제5조의2제1항을	법 제24조	판매 또는	판매 또는	판매 또는	등록취소

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 장품을 회수하지 않거 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6호 의2	제 조 업 무 정지 1개월	제 조 업 무 정지 3개월	제 조 업 무 정지 6개월	
타. 법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4조 제 1 항 제 6 호의3	판매 또는 제 조 업 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제 조 업 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제 조 업 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9조에 따른 화장 품의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 우	법 제24조 제 1 항 제 8 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3개월	해당 품목 판 매 업 무 정지 6개 월	해당 품목 판 매 업 무 정지 12개 월	
하.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 따른 1차 포 장만으로 구성되는 화 장품의 외부 포장,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 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 장 및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 의 1차 포장 각각의 기 재·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 제 1 항 제 9 호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 2항의 기재사항(가격 은 제외한다)의 전부 를 기재하지 않은 경 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3개월	해당 품목 판 매 업 무 정지 6개 월	해당 품목 판 매 업 무 정지 12개 월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 2항의 기재사항(가격 은 제외한다)을 거짓 으로 기재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	해당 품목 판 매 업 무 정지 3개 월	해당 품목 판 매 업 무 정지 6개 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2개월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 2항의 기재사항(가격 은 제외한다)의 일부 를 기재하지 않은 경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5일	해당 품목 판 매 업 무 정지 1개 월	해당 품목 판 매 업 무 정지 3개 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6개월

우					
거. 법 제10조, 이 규칙 제19조제7항 및 별표 4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9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너. 법 제12조 및 이 규칙 제21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9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더.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0호				
1) 별표 5 제2호가목·나목 및 카목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 (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9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9개월 (광고위반)	
2) 별표 5 제2호다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4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 (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2개월 (광고위반)
러.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	법 제24조제1항제10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고를 한 경우		월	월	
며.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1)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되거나 이물질이 혼입 또는 부착된 화장품 2)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3)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4)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사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5)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97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법 제24조 제1항 제11호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9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12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12개월 등록취소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12개월

(1)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90퍼센트 이상 97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시정명령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2)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4개월
(3)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80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나) 기능성화장품에서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부족한 경우				
(1) 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2) 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다)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7) 그 밖에 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버. 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12호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서. 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검사명령·개수명령·회수명령·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13호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13호의2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로서	법 제24조 제1항 제14호				
1) 업무정지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경우 (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취소			
2) 광고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광고 업무를 한 경우		시정명령	판매업무 정지 3개월		